

자 본 시장법

2021년 4월6일시행

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하여

메신저·이메일을 통한 공매도대차거래시

①종목 & 수량 ②체결 &결제일시 ③ 상대방 ④기간&수수료율 정보를

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적장치로 5년보관 & 즉시제출

위반시 처벌

보관&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6천만원

(법인은 6천만원, 개인은 3천만원)

증권선물위원회가 압수, 사업장수색 가능

불법공매도 적발시

- ①징역:1년이상 ②벌금:부당이득의 3~5배
- ③과징금: 공매도 주문금액의 100%,

공매도 후 유상증자참여시
과징금 5억 or 부당이득액의 1.5배

금융당국 현황

불법공매도점검주기를 1개월로 단축
(기존 6개월)

금융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한

‘조사·심리기관 협의회(조심협, 검찰 포함)’

개최주기를 1개월로 단축(기존 3개월)

① 전화,수기로 체결되던 계약을
메신저, 이메일로 전환

② 네트워크DLP로 보관

③ 주기적 기록관리로 자율규제

그 (시행령)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 수량, 계약 체결일시, 거래 상대방,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. (안 제208조제5제1항)

○ 단,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다음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. (안 제208조제5제1항)

i) 메신저·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“전자정보 처리장치”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

*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

ii) 메신저·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의 원본을 위·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

* (예) 메신저 화면 캡처,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

금융위 자료에 따른 대차거래정보 보관 인정 수단
<http://www.fsc.go.kr>

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, 시행령〉 개정, 2021년 4월 6일 시행
법 180조의5 ①, 영 208조의 5

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시

다음 정보를 (1. 종목 및 수량 2. 체결 및 결제일시 3. 상대방 4. 기간 및 수수료율)

5년간 다음 방법으로 보관

1. 체결 즉시 해당정보가 기록·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

2. 이외 방법

가. 위·변조 불가 전산설비 or 전자적방식으로 계약원본보관

나. 계약 체결 후 공매도주문 전 지체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입력

다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)